「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: 교통안전」 기획분석

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

「전동킥보드」 관련 민원 분석

2019. 3.

국민권익위원회

목 차

Ⅰ. 분석 배경 ····· 1

Ⅱ. 민원현황 ····· 3

Ⅲ. 민원유형별 분석 ····· 5

Ⅳ. 민원분석에서 나타난 시사점 ····· 16

1 전동킥보드 **운행도로 개선** ····· 16

2 **대중교통별 휴대기준 정비** ····· 17

3 불법 전동킥보드 **안전규제 강화** ····· 17

4 **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** ····· 18

5 전동킥보드 **법적지위 명확화** ····· 18

6 안전운행을 위한 **교육·홍보 강화** ····· 19

Ⅰ. 분석 배경

□ 개인형 이동수단(Personal Mobility)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

○ **전동킥보드, 전동휠 등**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다양화와 함께 이용 **대중화**

- PM 이용자 200명 중 65% (130명)는 가까운 거리 이동시, 29.5% (59명)는 출퇴근시 사용 (한국소비자원, 2016년, 중복응답)
- 일반국민 (2,234명) 및 PM 이용자 (77명)의 66%가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유용하다고 응답 (한국교통연구원, 2016년)

<개인형 이동수단 시장 전망>
* 출처 : 한국교통연구원, 2017년

□ 이용 인구의 증가와 함께 각종 안전사고도 증가 추세

○ '18.9월, 최초로 전동킥보드에 치어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**교통사고, 제품안전사고**도 증가

- **교통사고 :** '17년 117건 발생, 사망 4명, 부상 124명 (경찰청, '17년부터 공식집계)
- **제품안전사고 :** ('15) 5건 → ('16) 51건 → ('17) 125건 → ('18.10월) 203건 (한국소비자원)

□ 새로운 교통수단 등장에 따른 제도 정비 필요

○ 현재 교통환경 및 법제는 자동차·자전거·보행자 정도로 구분되어 있어 **전동킥보드 등 새로운 교통수단에 적합한 정책 필요**

※ 현재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여 교통수단으로서 **자동차와 동일하게 취급**되고 있으나 실제 **이용 특성은 자전거와 유사**하여 보완 시급

○ **전동킥보드 등 새롭게 증가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분석**하여 관련 규정 개선 및 안전대책 등 모색

☞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제도 보완시 활용할 수 있도록 **민원분석 결과와 시사점을 관계기관에 제공**

「전동킥보드」 개념 및 관련법령

□ 전동킥보드 개념

▸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대표적인 **개인형 이동수단** (Personal Mobility·**PM**)의 한 종류

< 개인형 이동수단(PM) 주요 종류 >

전동킥보드 (전동휠 포함)			전기자전거	전동스쿠터	

□ 관련법령

▸ **「도로교통법」**

- 전동킥보드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며, **원동기장치자전거**로 분류됨

< 원동기장치자전거 (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) >

> ▸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
> ▸ 배기량 50시시 미만 (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.59킬로와트 미만)의 원동기를 단 차

▸ **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** (이하 '공원녹지법 시행령')

- **원칙적으로 공원 등에서 운행이 금지**되며, **예외적으로 가능** ('18.12월 신설)

< 공원 운행이 가능한 전동킥보드 (공원녹지법 시행령 제50조제5호나목) >

> 중량 30킬로그램 미만, 최고속도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으로서 공원관리청이 종류 및 안전기준 등을 정해서 허용하는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공원관리청이 정한 통행구간으로 출입하는 행위

▸ **「전기안전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** (이하 '전기생활용품안전법')

- **전동킥보드 제조·판매시 안전기준**을 정하고 있음 (최고속도를 25km/h로 제한)

※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조 (정의)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(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),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「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」 (스케이트보드)

☞ 현행법상으로 **전동킥보드는 '차'**에 해당되며 **차도에서 운행**해야 함

Ⅱ. 민원현황

1 민원 추이

○ 최근 3년간 ('16.1월~'18.12월)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'전동킥보드' 관련 민원은 총 **1,292건**으로 **월평균 35.8건** 수준

- 매년 꾸준히 **증가 추세**이며, 야외활동이 용이한 **4월부터 증가하여 9월까지 지속**되다가 **겨울에 감소**하는 경향
- 인도 등에서의 **전동킥보드 단속요청 민원은 계절에 민감**하고, 그 외 민원 (불량제품 신고, 제도개선 요청 등)은 계절 관련성 낮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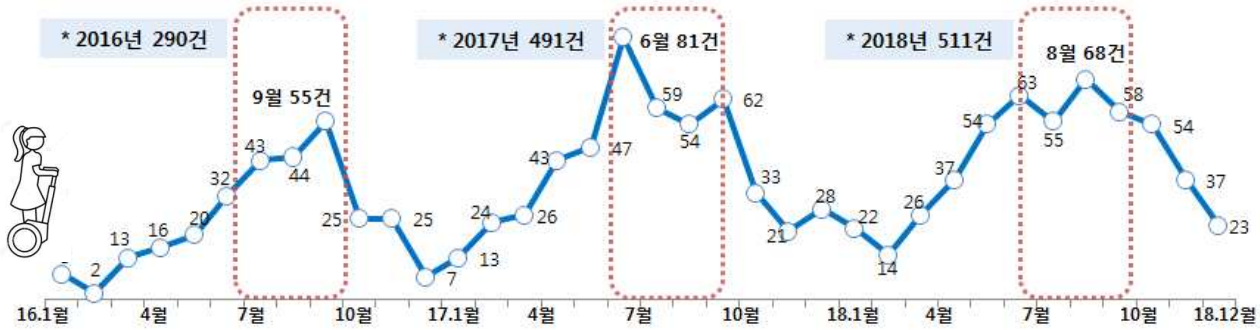

2 신청인 현황

○ **(연령별) 30대가 52.0%로 과반수**이고, 40대 21.2%, 20대 17.6%, 50대 3.7%, 60대 이상 3.7% 순임

<연령별 신청인 현황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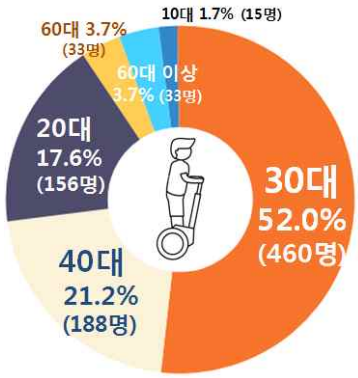

○ **(성별) 남성 77.5%**, 여성 22.5%

※ 연령, 성별이 표시된 민원에 대한 통계

○ **(지역별) 서울이 37.6%** (416건)로 가장 많고, **경기가 27.1%** (300건), 인천, 부산, 대구 등의 순임

3 처리기관 현황

○ **중앙행정기관이 53.6%** (692건)로 가장 많고, 기초지자체 25.1% (324건), 광역지자체 17.1% (221건), 공공기관 4.3% (55건) 순

- (중앙행정기관) **경찰청 35.3%** (244건), **산자부 35.1%** (243건)로 다수를 차지하고, **과기정통부** 18.1% (125건), **국토부** 5.3% (37건), 행자부 2.0% (14건) 순임

  ☞ 경찰청은 '전동킥보드 운행 등 단속요청, 교통사고' 민원이 다수

  ☞ 산자부·과기정통부는 '불량·불법 전동킥보드 신고, 인증·수입 문의', 국토부·행자부는 '제도 정비' 민원이 많음

<처리기관 현황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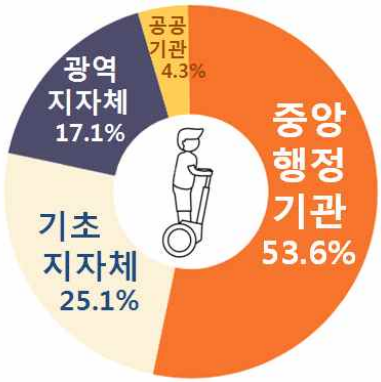

- (기초지자체) 324건 중 **경기 성남** (35건), **수원** (24건), **화성** (17건), 안양 (16건) 등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가 상위를 차지

  ☞ **성남 탄천, 수원 광교, 화성 동탄, 안양 안양천 등**에서의 '전동킥보드 운행 단속요청' 민원이 다수 발생

- (광역지자체) 221건 중 **서울이 176건**으로 가장 많고, 대전 10건, 세종과 울산이 각각 9건 순임

  ☞ 서울은 **한강공원**에서의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요청, 그 외 지자체도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요청이 대부분

- (공공기관) 55건 중 **한국소비자원이 18건**으로 가장 많고, 한국수자원공사 7건, 도로교통공단 5건 등임

  ☞ 한국소비자원은 '불량·불법 전동킥보드 신고', 한국수자원공사는 '아라뱃길·보 등에서의 단속요청', 도로교통공단은 '전동킥보드 제도 정비' 민원이 다수

도로교통법(경찰청), **전기생활용품안전법**(산업부), **전파법**(과기정통부), **공원녹지법·자동차관리법**(국토부), **자전거법**(행안부), **소비자기본법**(소비자원) 등 전동킥보드 관련 **법률이 다수인 만큼 민원 처리기관도 다양**

Ⅲ. 민원유형별 분석

1 전동킥보드 **운행 단속** 요청
2 전동킥보드 관련 **제도 정비**
3 **불량·불법 전동킥보드** 신고
4 전동킥보드 **인증·수입 문의**
5 전동킥보드 **교통사고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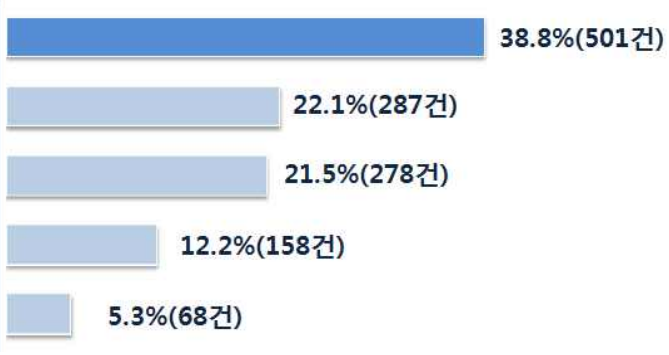

1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 요청

○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(총 1,292건) 중 **운행 단속을 요청**하는 민원이 전체의 **38.8%** (501건)로 **가장 많음**

<단속 요청 민원 현황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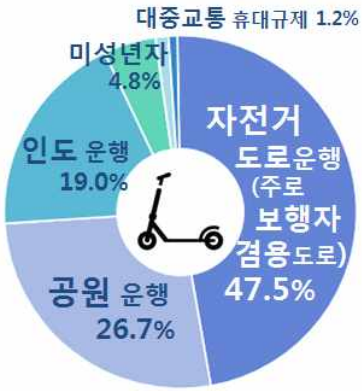

- 이 중 **자전거도로**(주로 **자전거·보행자 겸용도로**)에서의 운행 단속 요청이 **47.5%** (238건)로 다수를 차지
- 다음으로 산책로 등 **공원 26.7%** (134건), **인도 19.0%** (95건)에서의 운행 단속 요청 순임
- 그 외 **미성년자** 운행 단속 **4.8%** (24건), 버스·지하철 등 **대중교통 휴대 규제** 요구 1.2% (6건), 기타* 0.8% (4건)

* 엘리베이터 내에서 킥보드 운행, 안전모 미착용 등

<참고 : 전동킥보드 운행시 법적 의무사항(도로교통법)>

차도의 우측 가장자리 이용	**16세 이상**	**안전모** 착용	**음주운전 금지**	원동기장치자전거 **운전면허**
인도, 자전거도로, 공원 이용 불가	초·중등학생 운행 불가			

☞ 「도로교통법」상 **전동킥보드는 차도를 이용해야** 하나 **자전거 도로, 인도 등에서 이용**하면서 **전동킥보드 이용자 증가와 함께 보행자의 불만도 증가**

※ 우리나라 자전거도로의 77.3%가 자전거·보행자 겸용도로

☞ **지난 해 말**부터 '공원녹지법 시행령' 개정으로 **일정 기준을 갖춘 전동킥보드는 공원 운행이 가능** ('18.12.13. 시행)

※ 30kg 미만, 25km/h 미만으로 공원관리청이 종류·안전기준 등을 정한 동력장치

< 주요사례 : 자전거·보행자 겸용도로, 인도 등 운행 단속 요청>

[자전거·보행자겸용도로 전동킥보드 운행 엄중 단속 요청]

○○천 산책로 **자전거도로에서 고속으로 이동하는 전동킥보드**가 수시로 보입니다. 해당 산책로는 수많은 주민들이 자전거 및 도보로 이용하는 곳이며 유아와 어린이들도 상당수 다니는 곳입니다. 특히 오후 5시~ 8시 무렵 고속으로 달리는 전동킥보드가 자주 출몰합니다. **산책이나 조깅을 사람들은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**입니다. 자칫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 집중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.

[자전거전용도로에서의 전동킥보드 운행 금지 지도 요청]

○○천 자전거전용도로에 전동킥보드가 아침, 저녁 상관없이 매일 속력을 내며 다니고 있음. 제재가 없으니 속도도 줄이지 않고 쌩쌩 속력을 높여 다니는데 사고가 날 뻔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님. 현장 확인하여 **전동킥보드 금지라는 팻말을 부착하거나 전동킥보드 이용자에 대한 지도를 요청**함.

[공원 내 전동킥보드 타는 것 단속해주세요]

최근 공원 내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. **전동킥보드가 공원 내로 진입하는 건 정말 위협적**입니다. 뉴스에서 이전에 한강에서는 이런 내용으로 단속을 한다는 걸 본적이 있습니다. **최소한 주말에라도 단속을 해서 공원 산책 중 사고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게** 해 주시길 바랍니다.

[인도로 다니는 전동킥보드 막아주세요]

인도에서 킥보드 타는 사람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? 오늘 아침에도 사고 가 날 뻔 했는데 정말 불안해서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. **자전거전용 도로라면 이해하겠지만 인도에서까지 빠르게 킥보드 타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피해**를 보고 있어요.

< 주요사례 : 미성년자 운행 단속 요청 >

[미성년자 전동킥보드 운행 위험]

공원 겸 놀이터에 아이랑 같이 나와 놀고 있는데, **초등학교 3학년정도로 보이는데 전동킥보드 타네요.**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증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**옆에 뛰고 있는 아이들이랑 접촉 사고나 안전위험**이 있어 보입니다. 공원 안내판이나 현수막으로 커다랗게 보일정도로 안전예방 조치차원에 설치하면 좋을 거 같아요.

[미성년자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 요청]

초등학생들이 전동킥보드와 전동휠을 정말 많이 탑니다. 본인들도 위험하지만 곁에 있는 사람들도 위험하고요. **면허가 있는 사람만 탈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왜 단속을 하지 않는지요.**

[미성년자에게 전동킥보드 대여]

얼마 전 충남 대천에 여행을 다녀왔는데요. 대천 광장 주변 편의점에서 **전동킥보드 를 대여를 해 주고 있는데, 나이 제한도 없고** 면허증 검사도 없습니다.

< 주요사례 : 대중교통 탑승 규제 요구 등 >

[지하철 내 전동킥보드 승차 규제 요청]

지하철 내 자전거 승차규정은 주말만 가능하지만 전동킥보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**전동킥보드는 크기도 상당하여 특히 출퇴근시간대에 통행에 큰 불편**을 야기합니다. 전동킥보드도 자전거와 동일한 승차규정 혹은 출퇴근 특정 시간대에는 승차불가로 규정 개정이 필요하오니 빠른 검토 부탁 드립니다.

[버스에 전동킥보드 가지고 타지 못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]

심야버스에 전동킥보드나 전동휠같은 장비를 가지고 무리하게 타시는 승객분이 많아 다른 승객이 피해를 보는 일이 빈번합니다. 저 역시 얼마 전 **버스에서 내리던 중 바닥에 내려져있던 킥보드에 걸려 넘어지면서 뒷문에 얼굴을 부딪혀서 멍**이 들었습니다. 앞으로는 버스에 전동킥보드를 못 가지고 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[안전모 착용없이 전동킥보드 운행]

요즘 들어 도로에서 운전하다 보면 전동킥보드를 도로에서 타고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**안전모도 착용 안하고 1,2차선을 자유로 타고 다녀**도 되는지요?

혹시라도 접촉사고가 나면 어떠한 처벌에 해당되는지도 묻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.

접촉사고시 이건 큰 사고가 될 듯합니다.

2 전동킥보드 관련 제도 정비

○ **전동킥보드 운행·이용 등에 관한 제도 정비**에 관련된 민원이 **전체 민원의 22.1%** (287건)로 두 번째 많은 비중을 차지

<제도 정비 민원 현황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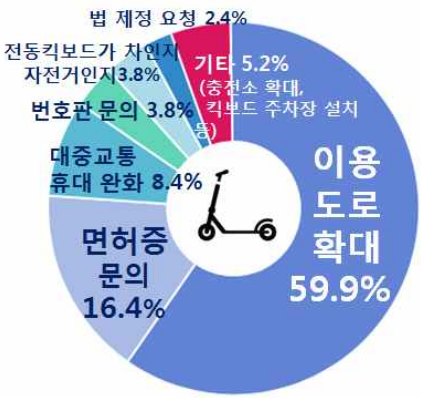

- 전동킥보드 속도(최고 25km/h) 등을 고려하여 차도 이외에 **자전거도로** 등 **이용 가능한 도로를 확대**해달라는 내용이 59.9% (172건)로 가장 많음

  ※ 자전거도로에서의 운행 단속 중지 요청, 단속에 대한 이의제기 민원 등 포함

- 다음으로 전동킥보드 운행시 **운전면허 필요 여부** 질의 16.4% (47건), 버스 등 **대중교통에서의 휴대 완화 및 개선요청** 8.4% (24건) 순

  ※ 전동킥보드 운행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필요 (도로교통법 제80조)

- 그 외 **번호판**이 필요한지, 전동킥보드가 **차인지 자전거인지** 질의가 각각 3.8% (11건), **별도법 제정 요청** 2.4% (7건), 기타 5.2% (15건) 등임

  ※ 전동킥보드는 「도로교통법」상 차에 해당되나 「자동차관리법」상 번호판은 불필요

- 기타 내용으로 전동킥보드 **충전소** 확대, 킥보드 **주차장** 설치 요청, **등록허가제** 필요, **자동차보험 가입 질의** 등이 있음

☞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**원동기장치자전거**(예 : 스쿠터)**에 포함**되나 **운행방법·성능 등이 상이**하여 **제도개선 요구나 질의가 많은 것**으로 보임

- 전동킥보드와 **유사한 전기자전거는 지난해** '자전거법' 등 개정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제외되고 **자전거로 포함됨**

	전동킥보드	전기자전거	스쿠터(50cc 미만)
법적 성격	원동기장치자전거	자전거	원동기장치자전거
속도제한	25km/h 미만	25km/h 미만	-
운행동력	전기	전기	가솔린(전기스쿠터 제외)
중량	10~20kg	평균 30kg	60~80kg

☞ **대중교통 휴대**의 경우, 지하철·버스 등 각 운송사업자가 정한 여객운송 약관에 따라 일정 기준의 휴대품만 휴대 가능

- **운송사업자별로 휴대 가능한 물품의 기준이 다르고**, 동일 노선에서도 **버스 기사에 따라 휴대 허용여부가 달라** 민원 발생

< 주요사례 : 이용도로 확대 요구 >

[개인이동수단(PM)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허용해주세요]

자전거도로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직장인입니다. 최근 ○○시에서 **자전거도로에서 개인이동수단(PM)을 단속하고 있는데, 단속을 중단하시고 이용을 허용해 주었으면** 합니다. PM은 **차도로 다니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이동수단**입니다. 4차선 도로의 끝으로 25km로 달려야 한다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.

[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운행 허용 요청]

전동킥보드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시민입니다. 저는 대체 어떤 길을 이용해야 합니까? **도로에 나가면 차량들이 몰아붙이고 위협하며 심지어 도로에 나오지 말라며 욕설을 퍼붓습니다.** 그런데 **자전거도로와 인도를 이용하면 불법이라며 단속**을 합니다. 범법자가 아닌 **당당한 권리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싶습니다.**

[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사용]

자전거도로로 다니지 말라고 하시다니요? 자전거 타시는 분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하시는데 그건 **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나 동일한데, 킥보드는 안되고 전기자전거는 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.**

< 주요사례 : 대중교통 휴대 거부 이의 >

[전동킥보드 버스 승차거부 신고]

전동휠을 들고 타려는데 버스기사가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고 전동휠 때문에 (탑승)안 된다는 식의 손짓을 했음. **버스 안에서 전동휠을 타는 것도 아니고 들고만 타는 것인데 승차 거부하여 불편을 겪음.** 이를 신고하며 원래 전동휠을 들고 버스 탑승이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청함.

[초경량 전동킥보드의 시내버스 탑승 가능 여부]

지하철-버스 연계를 통해 초경량 전동킥보드와 병행하여 출퇴근한지 3개월이 넘었습니다. 근데 오늘 난데없이 **버스기사분이 원동기라며 탑승하면 안 된다는데** 이게 무슨 소리인지요? 더 큰 바퀴가 달린 캐리어는 괜찮고 초경량 전동킥보드는 안 되는 건가요?

< 주요사례 : 현행 제도 문의 및 개선요구 등 >

[전동킥보드 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]

저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국민입니다. **관련 법규의 미비로 최근 여러 차례 뉴스에 소개되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**의 문제점으로 인해 많은 사용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. 관련 법규가 국회에 통과되기를 마냥 기다릴 수만 없는 상황에서**, 현재 법규 내에서의 기준이라도 좀 더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.**

[전동킥보드 운행방법 명확히 알려주세요]

어디를 보면 면허 없어도 된다, 어디를 보게 되면 몇 W 이상이 되면 면허는 필수라고 합니다. 그런데 길을 걷다보면 어린 학생들도 성인이 타고 다니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닙니다. **어디서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불법인지 명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**

[퍼스널 모빌리티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]

현재 도로교통법은 퍼스널 모빌리티를 원동기로 구분하여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장소 및 도로 확보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. 퍼스널 모빌리티는 평균 10km 정도의 속도이므로 오토바이보다 현저히 느리기 때문에 **현 도로교통법에 의거한 공공도로에서 달리기는 적합하지 않은 이동수단**입니다. 따라서 이를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

[전동킥보드 번호판 발급 문의]

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인데 **번호판 발급이 왜 안 되는지요?** 번호판이 없으면 도로운행이 불가하다는데, 그렇다면 전동킥보드는 도로에서 달릴 수 없나요?

➜ (처리기관 답변) 25km/h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, 전동킥보드 등이 도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성능과 기준을 갖추어야 함. 즉, **전동킥보드는 번호판 발급 대상 아님**

[중학교 2학년, 전동킥보드 면허 필요하나요?]

전동키보드를 아주 갖고 싶고, 취미생활로 하고 싶어 사는 것에 대해 부모님과 상의를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오토바이와 비슷하다고 원동기 면허증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. 꼭 면허증을 따야하나요? 만약 따야 한다면 제가 빠른 03년생인데도 따는 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.

➜ (처리기관 답변)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하고 16세 이상 응시가 가능하므로, 현재 **민원인은 만13세에 해당되어 면허증 취득이 어려움**

3 불법 · 불량 전동킥보드 제품 신고

○ 분석대상 민원 (총 1,292건) 중 **불량·불법 전동킥보드 제품**에 관련된 민원은 21.5% (278건)

- KC마크 등 **안전 미인증 제품 제조·판매** 신고가 **60.1%** (169건)로 다수를 차지
- 다음으로 **미인증 제품 구매대행** 신고 20.1% (55건), **불량 전동킥보드 환불** 등 요청 7.7% (21건) 순
- 그 외 전동킥보드 **결함으로 인한 제품 안전사고** 6.2%(17건), **속도 등 불법개조** 신고 5.9%(16건) 도 있음

<불법·불량 신고 민원 현황>

☞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수단(PM) 관련 **위해 사례 중 제품 결함 원인이 55.9%**(338건)로 가장 높음

※ 제품결함 338건, 화재발생 등 54건, 미끄러짐·넘어짐 228건, 충돌 16건, 기타 9건 ('16.1월~'18.12월, 한국소비자원)

☞ 현재 **구매대행**으로 국내 반입된 전동킥보드는 **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**되고, **구매대행자에게 인증책임 없음** (전기생활용품안전법)

- 단, 구매대행자는 구매대행 제품이라는 사실과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이라는 사실은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함

※ 전동킥보드 **안전인증은 국내에서 제조·판매하는 사업자에 해당**

< 주요사례 : 안전 미인증 전동킥보드 제조·판매 신고 >

[KC 가짜마크로 판매 유인한 전동킥보드 판매업체 미인증 제품 신고합니다]

전동킥보드를 **구매한지 며칠 되지 않아 고장이 나서 수리를 요청**했고 판매 페이지에 KC마크가 있어 안전인증을 받은 건지 물었더니 판매업체가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더군요. 알아보니 **판매 페이지 내에 KC마크 이미지만 갖다 놓고 실제 안전인증 번호는 없고**, 전파인증 적합등록 번호만 기재해놓고 KC라고 해 놓았더군요.

[인증 받지 않은 제품을 중국에서 사서 팔고 있습니다]

주식회사 ○○는 전동킥보드 및 부품을 파는 회사입니다. 이 업체는 KC인증 등을 받지 않고 **해외직구 방식으로 판매**를 합니다. 조치 바랍니다.

➜ (처리기관 답변) 구매대행으로 **구매자명으로 반입하는 사업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**됨

< 주요사례 : 불량·결함 전동킥보드 신고 >

[불량 전동킥보드 신고]

이틀 전 **주행 중 브레이크가 파손되는 사고**를 겪었습니다. 도로 위에서 사람이 출현하는 것을 보고 브레이크를 잡는 순간 '퍽'하는 소리가 들렸고, 제동이 되지 않아 지나던 행인을 피하며 킥보드 위에서 뛰어내렸습니다. 확인해 보니 브레이크 와이어가 끊어졌더군요. 한 달 전쯤에는 **주행 중 가속 스위치가 작동되지 않았습니다.**

[결함 전동킥보드 판매업체 ○○모터스 고발]

첫 번째 **운행 중에 제품의 꺼짐현상** 발생하였습니다. 퇴근 때 다시 켜져 집에 정상적으로 타고 왔으나, 다음날 다시 켜지지 않아 A/S를 맞겼습니다. 10여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직접 전화하였고, 컨트롤러를 교체했다고 하면서 2주 만에 물건을 받았습니다. 하지만 받은 제품은 이전과 똑같이 켜지지 않았습니다.

[전동킥보드 결함으로 사고 발생]

탑승 중 갑자기 전원 off로 인해 몸이 튕겨져 나가는 사고 발생. 바로 판매업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소비자 과실로 절대 기계 결함은 있을 수 없다며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들음. 결함이 있다면 소비자가 직접 밝히라는 말과 함께 계속 책임회피.

[전동킥보드 충전 중 폭발]

집에서 킥보드를 충전하다가 갑자기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. 배터리 문제인지 충전기 문제인지 확인하고 싶은데 판매처(제조사) 외에 어느 기관에서 점검이 가능할까요?

< 주요사례 : 불법개조 전동킥보드 판매 신고 >

[전동킥보드 불법개조 판매자 신고]

○○ 자전거 매장에서 전동킥보드를 불법개조 해 판매하고 있습니다. **시속 25km 이상으로 판매하면 불법인데 개조 후 시속 45~53km까지 나온다며 블로그에 홍보**까지 하고 있네요.

[전동킥보드 속도제한 해제 후 판매하는 업체 단속 요청]

전동킥보드는 25km/h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, 최근 일부 비양심적 업체들이 **최고속도 25km/h로 안전확인 신고를 마친 후에, 속도제한을 해제하여 판매**하고 있습니다.

4 전동킥보드 인증 · 수입 등 문의

○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(총 1,292건) 중 **인증 및 수입·판매 문의 등**에 관련된 민원은 전체의 12.2% (158건)

- **전동킥보드 및 배터리 등 부속품 안전인증** 문의가 53.8% (85건)로 과반수

  ※ '17년부터 전동킥보드 제조·판매는 '전기생활용품안전법'상 안전기준을 준수해야함
  (예 : 최고속도를 25km/h로 제한)

- 다음으로 **수입·판매 및 대여** 관련 문의 38.6% (61건), **구매대행** 관련 문의 7.6% (12건)

< 인증수입 문의 민원 현황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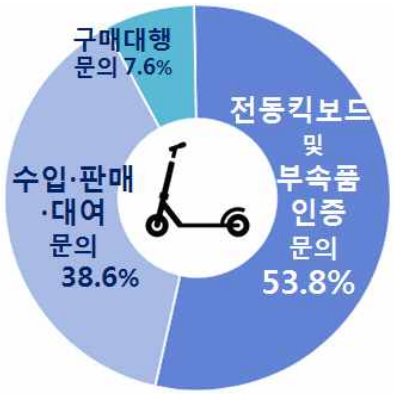

< 주요사례 >

[해외직구시에도 KC인증을 받은 상품을 구매해야 하나요?]

소비자로서 가격이 싸고 좋아서 해외직구로 구매하려고 합니다. 이게 불법인지요?

➜ (처리기관 답변) **개인직구는** 미인증 제품의 **안전사고에 대한 책임도 개인**이 책임을 지고 구매하는 것으로 불법이 아님

[전동킥보드 보조배터리 인증 관련 문의]

스마트 모빌리티 수입·유통업체입니다. 취급 제품 중에 전동킥보드가 있는데요. 전용 보조배터리가 있습니다.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. (생략). **이 보조배터리는 꼭 전동킥보드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. 이럴 경우 어떤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** 문의 드립니다.

[전동킥보드 인증 관련 문의사항]

전동킥보드를 수입해 판매하려는 업체입니다. 몇 가지 혼동되어 문의 드립니다. 전파적합등록, 생활안전확인 2가지 인증으로 유통이 가능한지요? 해당 품목이 '완구'로 분류되는지요? 어떤 도로에서 통행이 가능한지요?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도로에서 합법적으로 통행이 가능한지요? 차도를 통행하려면 형식 승인이 필요한지요?

[전동킥보드 KC인증 문의]

전동킥보드를 수입·판매하려고 하는데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전 제품을 KC인증 받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 "파생" 이라는 것으로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데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.

5 전동킥보드 교통사고

○ 전동킥보드 **운행 중 교통사고**와 관련된 민원은 5.3% (68건)

- 도로 함몰, 균열, 맨홀 등 **도로 파손으로 인한 사고**가 **54.4%** (37건)로 가장 많음
- 다음으로 **킥보드 운행자에 의한 사고**가 **25.0%** (17건), **차량으로 인한 킥보드 사고**가 **19.1%** (13건)*

* 사고 원인은 민원내용에 따른 분류

<교통사고 민원 현황>

☞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**200명 중 23.0%** (46명)**가 실제 안전사고 경험**
- 단순 넘어짐 67.4% (31명), 보행자 충돌 34.8% (16명), 자전거 충돌 28.3%(13명), 자동차 충돌 15.2% (7명), 오토바이 충돌 10.9% (5명) (중복응답, 한국소비자원, 2018년)

☞ 전동킥보드 **교통사고는 상해의 정도가 커서** 안전모 등 보호장비 착용 필요
※ 전동킥보드·자전거 충돌시 **머리와 목, 다리상해 모두 기준치 초과**(한국교통연구원, 2017년)

☞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**차대차 사고**에 해당되나 **대부분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사후조치 시 금전적 부담이 클 수 있음**

< 주요사례 : 도로파손으로 인한 사고 >

[도로 맨홀 뚜껑 단차 보수 요청]

맨홀 뚜껑과 도로면이 단차가 심해 제 전동킥보드 휠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야간에 인지가 잘 안 되는 점을 고려하여 또 다른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게 빠른 조치 부탁합니다.

[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도로 포트홀 때문에 다쳤습니다]

상수도 공사로 어마어마한 수의 포트홀(상수도 맨홀 등)이 생겼는데, 상당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방치 중입니다. 처음엔 대수롭게 넘겼는데 **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그 포트홀 때문에 넘어져서 다리가 좀 까지고 모터축이 휘어서 수리**를 했습니다. 민원 신청 후에도 조치를 안해서 다치게 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습니다.

[도로 공사로 인한 킥보드 사고]

전동킥보드로 주행 중 (시속 25km 이하) 평소 **가던 길에 검은 선이 있어서 감속**하며 밟고 지났습니다. 큰 충격과 함께 뭔가 떨어지는 소음이 있어 봤더니 **풋브레이크와 머드가드가 파손됐습니다. 검은 선이라 생각했던 건 깊고 꽤 넓게 파였던 홈**이었고, 공사 상황을 알리는 표지판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. **자동차 외에 도로를 달리는 탈 것들이 다양해진 요즘 이런 것은 매우 위험**한 것 같습니다. **경고 표지판이 더 확실히 더 눈에 띄게 혹은 서행을 위한 안내인이 있어야** 할 것입니다.

< 주요사례 : 전동킥보드 운행자에 의한 사고 >

[전동킥보드가 사람을 다치게 해요]

오늘 **부모님께서 해안길을 걸어오시다 아주 빠른 속도로 운행하는 전동킥보드에 치셨습니다.**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빈번한 요즘 이런 사고가 더 이상 나지 않도록 전동킥보드 출입금지 팻말이나 표지판을 더 크게 설치하거나 킥보드 대여점에서 안전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.

[인도 보행 중 전동킥보드와 충돌, 보상받을 수 있나요?]

인도 보행 중에 전동킥보드(36V, 시속35Km)와 충돌하는 사고로 치료 중입니다. 가해자는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어 무면허 운전과 인도 침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. 하지만 가해자의 **전동킥보드는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없는 상태**입니다. **피해자가 정부보장 사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** 문의 드립니다.

➜ (처리기관 답변) **전동킥보드는 「자동차관리법」의 적용을 받는 이륜자동차로 볼 수 없으므로** 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」상의 **보장사업 적용대상이라 할 수 없음**

< 주요사례 : 차량으로 인한 전동킥보드 사고 >

[전동킥보드 이용자에 대한 버스의 위협 운전]

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 중이었습니다. 일방통행도로로 좌회전을 하려는데 뒤에서 빵빵 소리가 들려서 우측으로 붙어주었습니다. 그런데 **버스가 1,2,3차로가 텅 비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가는 차로인 4차로로 들어오더니 차체로 제 어깨를 치는** 겁니다. 속도가 빠르지 않아 중심을 잃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위험했습니다.

[차량 끼어들기 단속 요청]

저는 전동킥보드를 타는 학생입니다. **뒤에서 속력을 내며 자동차가 2차선에서 3차선으로 핸들을 틀며 제 앞길을 막았고,** 그대로 가면 버스에 정면충돌하기 때문에 급하게 틀었지만, 버스와 턱 사이가 너무 좁아서 **버스 후미 리어라이트에 부딪혔습니다.**

Ⅳ. 민원분석에서 나타난 시사점

1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운행도로의 합리적 개선

○ 합법적으로 **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는 도로 확충**

- **현행법상 차도에서 운행해야** 하나 현실적으로 **자전거도로에서 주로 운행**하는 상황

> ‣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장소 : **공원 등 도로 외 장소** (69.5%) 〉 **자전거도로** (68.0%) 〉 보도 (66.0%) 〉 차도 (40.0%) (중복응답, 한국소비자원, 2018년)

- 전동킥보드 이용 인구 증가와 함께 **운행도로의 확장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증가**하고 있어 개선 시급

※「공원녹지법 시행령」개정으로 **올해부터 공원에서 예외적으로 운행 가능**

※ 전동킥보드 **제도 정비 민원 중 이용도로 개선 요청이 59.9%** (287건 중 172건)

- 전동킥보드는 자동차·자전거와 달리 국가별 도로사정, 교통문화에 따라 운행공간이 달라 **국내 사정을 고려한 대책** 마련 필요

※ 최근 3년간 자전거도로 **운행 단속요청 민원은 감소**한 반면, **자전거도로 이용 확대 등 제도 정비 요구는 증가**

〈 참고 : 전동킥보드 운행도로 설문조사 결과 (중복응답) 〉

> ‣ 일반국민 (501명) : **자전거도로 81.0%**, 보도(인도) 60.5%, 도로 79.0%
> ‣ 전동킥보드 이용자 (799명) : **자전거도로 90.6%**, 보도(인도) 71.8%, 도로 59.5%
> ‣ 전문가 (22명) : **자전거도로 19명**, 보도(인도) 10명, 도로 7명
> * 출처 :「개인용 교통수단의 보급에 따른 제도개선 방향」, 한국교통연구원, 2016년

2 대중교통별 전동킥보드 휴대기준 정비

○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**대중교통 휴대 완화**를 요구하나, **휴대 제한**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**민원도 상존**

※ 전동킥보드 민원 중 대중교통 **휴대 완화 요청 24건** vs. **휴대 제한 요청 6건**

- **운송사업자별로 상이**한 전동킥보드 휴대기준을 정비하여 전동킥보드 이용자 및 그 외 대중교통 이용자의 불편 해소

> ‣ 민원사례) 지하철의 **자전거 휴대 특례처럼 전동킥보드 기준**도 만들어주세요.

○ 같은 운송사업자라 하더라도 **운전기사에 따라 전동킥보드 휴대 여부가 상이**한 사례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비도 필요

> ‣ 민원사례) 전동킥보드와 버스로 출퇴근한지 3개월이 넘었는데, **오늘 버스기사 분이 난데없이 원동기라며 탑승이 안 된다고** 했습니다.

3 전동킥보드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

○ 전동킥보드 **이용자의 무분별한 전동킥보드 개조 제한**

- 전동킥보드 자체의 안전성(구조, 형태, 최고속력 등)에 관련된 안전규제는 있으나 **이용상의 안전규제는 부족**

- 법령상 규격(최고속도 25km/h 이내로 제조·판매)에 맞는 전동킥보드 구매 후 **이용자가 속도 개조 등을 하는데 제한이 없음**

※ 전동킥보드 단속 요청 민원 238건 중 **‘과속’을 명시한 민원이 27건**에 이름

-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임의로 최고속도를 높이거나 **안전운행에 저해되는 개조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개선** 필요

※ 사례 : **전기자전거는** ‘자전거법’에서 **이용상의 안전요건을 규정**

<참고 : 전기자전거 안전요건(자전거법 제20조의2)>

② 누구든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③ 누구든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○ **불법 전동킥보드** 제조·판매자에 대한 **공익신고 활성화**

-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익신고를 적극 활용하여 **안전 미인증 또는 불법개조 제품** 제조·판매 업체 근절

※ 전기생활용품안전법, 소비자기본법 등 전동킥보드 관련 다수 법률이 공익신고 대상법률

※ **불법·불량 전동킥보드 제품 민원 중 안전 미인증**(169건) 및 **불법개조**(16건) 제품 제조·판매 신고가 **66%**(278건 중 185건)

4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 및 철저한 사후관리

○ 전동킥보드 **운행도로를 적시에 보수·관리**하여 안전사고 예방

- 바퀴가 작고, 요철에 민감한 전동킥보드 특성상 **도로 함몰, 균열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아** 도로 상태 관리가 중요

※ 전동킥보드 **교통사고 민원 중** 도로 함몰, 균열 및 맨홀 등 **도로 파손으로 인한 사고 54.4%**(68건 중 37건)

- 자전거도로에서의 전동킥보드 운행이 불법이나, 현실적으로 자전거도로에서 주로 운행되고 있어 특히, **자전거도로 관리** 필요

○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 관리 부실로 사고 발생시에는 **영조물 배상공제***가 가능하므로 이에 대해 **적극 안내**

* 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대다수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고, 이를 통해 도로 관리 부실 등에 따른 보상을 처리

○ **보행자 안전**을 위해 **인도 및 전동킥보드 운행이 금지된 공원*** 에서의 운행은 **단속** 철저

*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의 공원 운행은 금지되며, 예외적으로 가능(공원녹지법 시행령)

※ 전동킥보드 **단속 요청 민원 중 인도 운행 단속 요청 19.0%**(287건 중 95건)

5 개인형 이동수단(PM)의 법적 지위 명확화

○ 전동킥보드, 전동휠 등 다양한 **개인형 이동수단(PM)의 성능과 이용형태 등을 고려한 정책** 필요

※ 전동킥보드 민원 총 1,292건 중 **관련법 제정 등 제도 정비 민원이 22.1%**(287건)

- 현재 전기 동력의 개인형 이동수단 중 **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 정비**가 이루어짐 ('18.3월, 자전거법 개정)

※ 이에 따라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운행이 합법

-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일반국민 입장에서는 **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경계가 모호**하므로 제도 정비 시급

※ 현재 PM 개념 및 운행도로 등이 포함된 「도로교통법」 개정안 국회 계류 중(의원발의 2건)

〈 참고 : 주요 개인형 이동수단 비교 〉

	전동킥보드	전기자전거	스쿠터(50cc 미만)
속도제한	25km/h 미만	25km/h 미만	-
운행동력	전기	전기	가솔린(전기스쿠터 제외)
중량	10~20kg	평균 30kg	60~80kg

6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한 교육 · 홍보 강화

○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**청소년 대상 안전교육** 실시

- 전동킥보드는 조작이 용이하여 간단한 조작방법만 배우고 이용하나, 실제 운행시에는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 다수 발생

※ **운전미숙 단독사고 79.8%**, 차량 충돌 14.1%, 보행자 충돌 4.1%(현대해상연구소)

- 현행법상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없으나, 앞으로 **주요 수요층으로 부상**할 청소년에 대한 안전교육이 중요

※ 초·중등학교, 지자체 등에서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 중이므로 자전거 안전교육시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을 병행하는 방안 검토 등

<전동킥보드 운행시 주요 주의사항>

‣ 안전모 착용	‣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필요
‣ 16세 미만 운행 금지	‣ 음주운전 금지
‣ 인도 주행 금지	‣ 25km/h 이내로 운행

○ 일부 **공원 내 전동킥보드 이용 합법화**('18.12.13.)로 공원에서의 전동킥보드 운행이 증가할 경우 **보행자의 민원 증가 예상**

- 전동킥보드 이용이 허용된 공원 내에서는 **허용 여부 및 주의사항 등을 적극 안내**하여 보행자와의 갈등 예방 노력 필요